

서산군 지방양여금 특별 회계 설치조례

서산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1.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
2. 타 회계 전입금
3. 이월금, 차입금,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

제 3 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1. 도로 정비 사업
2. 농어촌 지역개발사업
3. 수질오염 방지 사업
4. 청소년 육성사업

제 4 조(지방채 발행등)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

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
제 5 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.

제 6 조(준용) 이 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

서산군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향교재단의 건전한 유지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불균일과세)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